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4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소진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8.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4. 10. 30. F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원금 300만 원, 차용일 2011. 2. 14., 만기일 2014. 2. 10.,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43.92%)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2) 원고는 2021. 2. 19.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22가소102255)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4. 5. 'C은 원고에게 11,958,297원과 그중 2,910,812원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4. 23. 확정되었다.
- 4) 2022. 5. 11.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2,318,119원이다.

나. 피고와 C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등

- 1) C의 아버지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8. 12.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은 배우자 H, 자녀 피고, C, I이고, 법정상속분은 H 3/9, 피고, C, I 각 2/9이다.
- 2) 위 상속인들은 2018. 8. 30.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차량 두 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원주시 J, K호 아파트 분양권과 L조합 및 M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H의 단독소유로 하고, C과 I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 3)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7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원이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857,000원, 2,751,000원, 1,366,000원, 2,167,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N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위해 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이 배달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통지를 인정할 수 없어 위 양수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기여분 등을 고려한 피고의 구체적인 상속분과 다르지 않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피고와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1995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모시고 살면서 가사를 전담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하며 간병을 하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제출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는 피고의 기여분 인정에 관한 내용이나 기여분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결정한 사실도 없는 점, ○ 피고는 C이 망인에게 차용금 채무 1억 3천만 원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망인이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C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C이 망인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분할협의는 위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 피고가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와 망인의 배우자만이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C과 I은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 보다 많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본래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여금 채권이어서 C이 그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강원도 원주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1층 1276.845㎡, 2층, 3층 각 1270.053㎡, 4층 내지 17층 각 1264.221㎡, 18층 내지 20층 각 996.223㎡, 지하1층 906.488㎡, 지하2층 408.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강원도 원주시 대 639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7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96분의 27.314 ㎡.

